

MINE 플랫폼 사업 파트너 (영업대행)

계 약 서



(주)아이티엑스엠투엠 O2O 사업본부
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
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406호
전화. 02) 2027 - 3430
팩스. 02) 2027 - 3434

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마인 플랫폼 (이하 "플랫폼" 이라 한다) 기반 서비스 APP (이하 "APP" 라 한다) 에 대한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다.

제 1 조 [계약당사자]

갑 : (주)아이티엑스엠투엠

을 : _____

제 2 조 [계약목적]

본 계약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 APP에 대한 영업 및 영업관리 대행에 있어서 "갑"과 "을"간의 계약조건과 절차, 권리 · 의무 및 책임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3 조 [계약기간]

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 서명, 날인 일부터 ____년으로 한다.

제 4 조 [계약일반]

제 1 항 (역할분담)

- ① "을"은 "갑"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APP에 대한 분양, 구축, SI사업의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대행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의 영업 및 영업관리업무에 따라 공급자 또는 사업자 계약진행 시 관련 운영업무 및 기술업무 등 실행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2 항 (계약조건)

- ① "갑"과 "을"은 본 계약기간 동안 터득한 상대방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, 인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동종 및 유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각자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, 만일 권리침해로 인한 문제발생시 문제 유발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.

제 3 항 (대행 수수료)

본 계약에 따른 영업대행 수수료는 "을"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하며, 아래 ①, ②호와 같은 비율로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한다.

- ① 분양 또는 구축 (개인형, 기업형) 영업대행 수수료 비율

구분	입점비 또는 구축비	센터	타운	쇼핑
수수료율	10%	0.5%	5%	0.5%

- ② SI 영업대행 수수료 비율

구분	솔루션 매출	개발비 매출	지능형녹화방송장비 매출
수수료율	10%	5%	5%

- ③ 수수료 정산
"갑"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"을"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(PG사 수수료, 매출취소분, 계약취소분,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) 을 상기 ①, ②호의 비율로 정산하여 익월 30일까지 "을"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 또한 수수료 지급 이후 발생한 매출취소분 및 계약취소분은 익월 정산 수수료에서 상계처리 한다.
- ④ 수수료 지급기간
상기 ①호의 센터 (예약금), 타운 (콘텐츠), 쇼핑 (재화 또는 용역) 매출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간은 "을"의 영업활동을 통한 공급자 또는 사업자 계약발효 이후 2년으로 한다.

제 5 조 [비밀유지]

- ① "을"은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, 해지 이후 "갑"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, 인력,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, 본인 독자사업 및 동일/유사사업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 만약 본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"을" 은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"을"이 제3자에게 상기 ①호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, 인력, 영업비밀 등의 정보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"갑" 의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일체의 정보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, 해지 이후에도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,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 [통지의무]

- ① 본 계약과 관련한 "갑"과 "을"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, 각 상대방에게 도달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"을"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개인사정 등의 발생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"갑"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경우, 사전에 그 사실을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기타 "갑"과 "을"은 신상변동 등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[계약의 변경 및 갱신]

- ① "갑"과 "을"은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 수 있다. 단,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각 당사자는 변경의 사유를 먼저 서면 통지 후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"갑"과 "을"은 본 계약과 별도의 세부계약 및 특약 등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보완 할 수 있으며, 별도 체결한 세부계약 및 특약 등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③ "갑"과 "을"은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상호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언급 없이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8 조 [계약의 해지]

“갑”과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 서면 통지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.
- ② 상대방 일방에 중대한 문제 (민·형사상 문제 포함) 가 발생한 경우.
- ③ 상대방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.
- ④ 상대방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의 신용, 명예 등이 훼손된 경우.
- ⑤ 상대방 일방의 문제로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형사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.
- ⑥ 상대방 일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.
- ⑦ 상대방 일방에 대하여 파산, 화의, 회사정리 신청 또는 이를 위한 보전처분신청이 있거나, 해산명령 또는 판결, 결의가 있을 경우.
- ⑧ 상대방 일방의 주요재산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된 경우.
- ⑨ 상대방 일방이 감독관청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처분을 받은 경우.

제 9 조 [손해배상]

- 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 후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(변호사 비용 및 기타 일체의 부대비용 포함) 를 가진다.
- ② 천재지변, 전쟁 또는 폭동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양 당사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
제 10 조 [권리, 의무의 양도 금지]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1 조 [기타,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]

- ① “을”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관리하던 공급자 또는 사업자 일체를 “갑”이 지정하는 자에게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.
- ②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내용 해석상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상위법률 또는 일반 관습법을 통해 해결한다.
- ③ 상기 ②호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을 위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
제 12 조 [계약의 발효]

본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서명, 날인 후 즉시 발생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갑” 과 “을” 이 서명,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 년 ____ 월 ____ 일

“갑” > 상 호 및 성 명 : (주)아이티엑스엠투엠 대표이사 박 상 열 <서명 또는 날인>
주 소 :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212 (가산동, 코오롱디지털타워에스던 906 호)
주민 (사업자) 등록번호 : 120 - 81 - 78820

“을” > 상 호 및 성 명 : <서명 또는 날인>
주 소 :
주민 (사업자) 등록번호 :

